

#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안내문

##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7% 범위 (7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경쟁이 있을경우 강릉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강릉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 원	9,222,467 원	9,222,467 원	9,611,741 원	10,111,430 원	10,611,119 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160% 이하	7,839,209 원 ~ 9,648,256 원	9,222,468 원 ~ 11,350,728 원	9,222,468 원 ~ 11,350,728 원	9,611,742 원 ~ 11,829,835 원	10,111,431 원 ~ 12,444,837 원	10,611,120 원 ~ 13,059,838 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100%
- ※ N → 9인 이상 가구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추가 자격확인 제출서류 (소득증빙 관련 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 청약 (청약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 (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을 위한 추가 자격확인 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 1600-1698